

범죄자 교정교화 개별화 고려되어야

사회의 질서와 법의 준수를 위해 우리가 오랫동안 의존해 왔던 주요 수단은 응보와 억제적 차원에서의 처벌이었다. 처벌이란 “사악함에 대한 정당한 응징”의 필요성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사려 깊은 사람이라면 이 같은 승화된 사회적 보복이론에 따르는 사람은 없다. 포악한 범죄행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을 공포심에 의존함은 문제해결에 대한 불합리하고 초보적인 방법일 뿐 아니라 부당하고 범죄자의 교정에 대한 과학적인 논쟁을 어렵게 한다.

형법은 각 죄과에 적합하다고 믿어지는 정확한 형량을 규정하고 있으며 법관은 기계적으로 이 같은 처벌조항에 따라 유죄 자에 형량을 부과한다. 그러나 범죄를 자행하고 아니하는데 영향을 주는 복잡한 정신, 사회 심리적 요인 때문에 처벌의 개별화는 절대로 필요하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대부분의 범죄행위는 비이성적, 감성적, 및 충동적 요인들과 관계가 깊다. 그러나 법관들은 이성적 틀을 만들어 놓고 그 틀 안에서 비이성적 행위들을 심판한다. 개별화는 현대과학이 허용하는 모든 범위 내에서 각 위법 자에 대한 철저한 이해를 근간으로 하여야 한다.


우리는 범죄자를 저주하고 우리의 증오를 표현함이 자연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옳고 당연하다고 때로는 논쟁한다. 이 같은 범죄자에 대한 반 작용적 증오는 학습에 의해 조성된 것이다. 사람들은 광기 있는 자들을 증오하는 습관이 있으며 그들은 이러한 관념에 따라 처벌되어왔다. 사회적으로 유해하다고 생각되는 행위를 증오하는 것은 적절할지 모르나 그들에 대한 증오감이 사회보호의 정책을 기초하는 것은 비경제적이고 불합리한 것이다. 보복적인 태도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오기 보다는 오히려 재범의 풍조를 저지하는데 실패하였기 때문에 비효과적이고 사회적인 낭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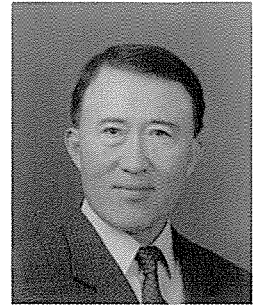
효과적인 개별화는 추측이나, 기계적인 절차, 육감, 정치적 고려, 또는 과거의 범죄 기록과 같은 것들에 만 기초하여서는 안 된다. 이는 각 범죄의 특수 상황과 각 범법자의 독특한 개성에 관련되는 정신적이고 사회심리적인 요인들에 대한 과학적인 인식과 평가에 근거해야 한다. 형법조항은 위법행위에 대한 세부규정을 미리 정해 놓은 것이지, 범죄자를 개별적으로 규정하는 형법조항은 아니다.

따라서 위험성과 덜 위험성을 규정하는 목록이 처벌의 개별화에 있어 법관들의 지침으로 채용되어야 한다. 형법에 대한 기본 기준은 ‘범법자의 위험성에 대한 원칙’에 근거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현행 형법은 행위자의 개성이나 다른 요인의 영향에 대한 고려 없이 범법

자의 현 행위에만 강조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범죄의 복잡한 증상 전체와 그 원인을 다루는 대신 그 행위만 취급하는 이상 공정한 처벌의 합리화는 어렵다. 그러므로 사회보호를 위한 법규정들을 범죄자의 특정행위의 중요성 보다는 오히려 그의 개성 즉 그의 위험성, 그의 자질, 그리고 교정처우에 대한 그의 반응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 처벌의 일환으로서의 교정은 그 목적이 범법자들을 위한 치유적 기능에 있어야 하며 그러한 방법들은 그 개인의 욕구, 복리 그리고 건강을 위하고 사회의 안전을 위해 범법자의 행동에 효과적인 변화가 발생하도록 고안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정의 주요 목적은 그 개인의 태도를 변화시키고 그가 적용해 나가야 할 환경을 다루는데 있어 그를 원조하는데 있으며 그 자신이 지니고 있는 내적 잠재력을 인식시키고 자제력을 얻게 해 주는데 있다. 태도는 대부분이 사회적 접촉의 산물이다. 개인의 태도를 결정지우는 주요한 접촉들은 빈번하고 친숙한 관계가 형성되는 가족, 또래집단, 그리고 그의 이웃이다. 태도를 수정하는 과정은 근본적으로 그 개인의 그룹관계를 변화시키는데 있다. 교화적 접근이란 근본적으로 개별적 접근을 의미한다. 개별화된 처우로서만이 우리는 결국 동일한 범행 그 자체에 대하여 동등하지 않은 처우를 제공하게 된다. 적어도 표면상으로는 평등에 대한 민주적 원칙에 위배되는 것 같으며, 특히나 범죄자들이 분노하는 것일지 모른다. 같은 죄과에 대한 동등한 처벌이란 아직도 인기 있는 정당한 개념일 뿐 아니라 형법의 신조이기도 하지만, 범죄와 처벌간의 동등이라는 말은 허구에 지날지도 모른다.

처벌의 개별화는 균등의 원리 하에서 다루어 질 수 있는 양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각 개인의 특성과 적성을 진단한 이후 그 개인에 가장 적합한 개별화된 처우의 적용이 제공되어야 하는 질적인 특성에 근거하여 처우가 이루어져야 한다. 교정의 처우는 형평 또는 평등과 같은 현실 검증이 가능하지 않은 허구의 혼미에서 벗어나 개인의 현실 적용성에 초점을 두는 개별화된 진단과 과학적인 입장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정우석 서강대학교 교정사회사업학 교수
한국교정보호포럼 회장